

제339회 임시회
2015.04.30.(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04.30.(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5년 04월 1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0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04월 22일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박종철)

가. 제안이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기구를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2015. 8. 31.까지)이 도래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한시 기구로 설치¹⁾하여 운영하였으나 존속기한(2015. 8. 31.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 12. 12.) 의결, 2012. 12. 28. 시행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행정관리국) ① (생 략)</p> <p>② <u>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한시 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행정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